중어중문학부 교환학생프로그램 학점인정 규정

개정일 : 2016. 12. 7.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중어중문학부 졸업요건규정>에 따른 중어중문학부 소속 학생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부 차원의 학점인정을 따로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본교 개설수업 외에 본교와 협정을 맺은 중국 파견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로 규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 2 장 국외 교류학점 인정 내규

제 3 조 (국외 교류의 전공학점 인정기준)

①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은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②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파견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다.

③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재수강할 수 없다.

④ 파견 후,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에 동일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둘 중 하나만을 인정한다.

⑤ 전공 교과목의 인정은 한 과목 당 3학점으로 제한한다.

⑥ 학점 인정을 위해 중어중문학부 학부장과 면담 시 파견대학의 강의계획서, 성적표 및 본교 학점이수표를 필수 지참하도록 한다. 이에 준하여 학점인정 절차를 진행한다.

⑦ 본 학부에서는 전공 학점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전공선택 : 한 학기당 6학점(3학점씩 두 과목)

전공필수 : 제 4 조 ②항 참고

제 4 조 (국외 교류의 전공필수학점 인정기준)

① 전공필수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은 파견 당시 전공필수로 구분되어있는 과목에 한한다.

② 전공필수 교과목인 고급중국어와 작문을 인정할 때에 본교의 교과목과 일대일 매칭을 한다. 그러나 파견대학에서 수강한 3학점 미만의 교과목은 전공필수로 인정이 불가하다.

③ 학칙 제 47 조 2항(참조 확인)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교과목의 인정은 파견 기간에 관계없이 전체 교환학점 중 한 과목(3학점)으로 제한한다.

제 5 조 (국외교류 인정학점 계산기준) 파견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파견대학에서 수강한 두 개 교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부족하거나 초과할 경우, 하단의 FAQ를 참고한다.

③ 전공 교과목 인정 학점 수는 과목당 3학점으로 제한한다.

참조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47조(타 대학교 등에서의 수학기간 및 취득학점)

②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의 1/2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학년도 3월 파견자부터 적용)

(2) 본 내규는 파견 전, 중국 대학으로 파견되는 모든 학생에게 배부되므로 파견 이후에는 본 내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학점인정에 관련한 본교의 학칙 및 시행세칙, 중어중문학부의 내규 미 인지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학부장의 승인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 내용은 번

복이 불가하다.

⑷ 교환학생프로그램 파견자는 학사지원팀으로 학점인정신청서를 최종 제출하기 이전에, 학부 사무실에 학점인정 서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FAQ

1. 파견대학에서 수강한 과목 두 개의 학점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파견대학에서 수강한 과목 두 개의 학점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ex. 비즈니스중국어Ⅰ 2학점, 비즈니스중국어Ⅱ 2학점을 취득한 경우, 비즈니스중국어 3학점 또는 4학점으로 인정불가)

2.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합니다. (ex. 비즈니스중국어 2학점을 취득한 경우, 3학점으로 인정불가)